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0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조승래·박선원·민형배

이해민 · 김 윤 · 황정아

박용갑 • 이정문 • 강선우

한준호 · 장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 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 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학생의 투표시간 보장)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투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제3항제1호 중 "제6조의2제2항"을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6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4(학생의 투표시간 보장)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u>청구할 수 있다.</u>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초・중등교육
	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u>한다.</u>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투표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u>제6조의2제2항</u>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 2. ~ 5. (생략)
- ④ ~ ⑫ (생 략)

----.

1. <u>제6조의2제2항 또는 제6조의</u> 4제2항-----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